

<p>제2020-203호 2020년 10월 30일(금)</p>	<p><b>시 보</b></p>  <p>여수시</p>	<p><b>시 정 지 표</b></p> <p>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청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417호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2656호 여수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명단 공고 4
- 여수시 공고 제2020-2663호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0-2672호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0-2673호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공사송달 공고 19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548호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21
- 여수시 조례 제1549호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9
- 여수시 규칙 제750호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32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 7. 1.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요

-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7월 1일
- 공 시 일 자 : 2020년 10월 30
- 결정·공시 필지수 : 1,813필지  
(2020.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

## 2. 공시사항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m<sup>2</sup>)당 가격
- ※ 필지별 결정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 3.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0. 10. 30. ~ 11. 30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FAX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능

## 4.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20년 12월 24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5.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659-3361~3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여 수 시 장

# 공 고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4조(운영위원회) 및 여수시 각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된 여수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10. 30. ~ 11. 13.(15일간)

2. 위원명단

**【여수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임기	구분	비고
1	위원장	서은수	공무원(부시장)	재직기간	당연	
2	부위원장	김학섭	공무원(관광문화교육국장)	재직기간	당연	
3	위원	김지선	공무원(문화예술과장)	재직기간	당연	
4	위원	이영만	여수시립합창단 지휘자	'16.10.13.~재직기간	당연	
5	위원	이상우	시의원	'20.11.01.~'22.10.31.	위촉	
6	위원	정광지	시의원	'20.11.01.~'22.10.31.	위촉	
7	위원	백충화	언론인(남도일보)	'20.11.01.~'22.10.31.	위촉	
8	위원	강숙자	음악인 (강숙자오페라단장)	'20.11.01.~'22.10.31.	위촉	
9	위원	조미숙	음악인 (한국음악협회여수지부장)	'20.11.01.~'22.10.31.	위촉	
10	위원	최재식	음악인 (사)한국음악교육센터이사장	'20.11.01.~'22.10.31.	위촉	
11	위원	엄재두	음악인 (시민오케스트라지휘자)	'20.11.01.~'22.10.31.	위촉	

### 【여수시립국악단 운영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직 업	위원임기	구분	비고
1	위원장	서은수	공무원(부시장)	재직기간	당연	
2	부위원장	김학섭	공무원(관광문화교육국장)	재직기간	당연	
3	위원	김지선	공무원(문화예술과장)	재직기간	당연	
4	위원	손 응	여수시립국악단 지휘자	'19.07.01.~재직기간	당연	
5	위원	이상우	시의원	'20.11.01.~'22.10.31.	위촉	
6	위원	정광지	시의원	'20.11.01.~'22.10.31.	위촉	
7	위원	안희봉	대학교수(전남대학교)	'20.11.01.~'22.10.31.	위촉	
8	위원	제정화	국악인 (사)여수민예총국악위원장	'20.11.01.~'22.10.31.	위촉	
9	위원	송호중	국악인 (한국국악협회전남지회장)	'20.11.01.~'22.10.31.	위촉	
10	위원	강성훈	언론인(남해안신문)	'20.11.01.~'22.10.31.	위촉	
11	위원	이선미	음악교사(진남여중)	'20.11.01.~'22.10.31.	위촉	

### 3. 위원역할

-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계획의 자문
- 시립예술단 지휘자 선정에 관한 자문
- 시립예술단 교육 및 공연활동에 대한 자문 등

### 4. 문의사항: 여수시 문화예술과(☎659-4693)

## 여수시공고 제2020-2663호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면제로 사용료 납부사항을 삭제하고자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사용허가대상(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 사용료 면제(제7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 2. 주요 내용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제4호(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삭제
- 제7조(사용료)제1항(사용허가로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 삭제
- [별표]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사용료(제7조관련) : 삭제
- 별지 제4호서식 중 사용료 납부사항란 : 삭제
- 별지 제5호서식 중 사용료란 : 삭제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 여수시 웅천6길 57(웅천동) 어르신문화체육센터

- 전자우편 :top9391@korea.kr

- 팩 스 : (061) 659-2840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전화 061-659-2840, 팩스 061-684-6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사용료 납부사항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사용료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u></p> <p><u>제7조(사용료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체육센터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별표]  <b>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사용료(제7조 관련)</b>  <input type="checkbox"/> 다목적체육관 대관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체육행사</th> <th colspan="2">일반행사</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일</th> <th>공휴일</th> <th>평일</th> <th>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다목적체육관</td> <td>1회 (4시간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p>* 야간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50%로 한다.</p>	시설명	기준	체육행사		일반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다목적체육관	1회 (4시간 기준)	60,000원	90,000원	120,000원	180,000원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u>제7조(사용료)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한다.</u></p> <p><u>&lt;삭제&gt;</u></p>
시설명			기준	체육행사		일반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다목적체육관	1회 (4시간 기준)	60,000원	90,000원	120,000원	180,000원														

□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 기	조명 시설	기본료(20,000원)(월기본요금(전기)×사용일수/30) +전기사용료	
	일반 전기	기본료(10,000원)+ [월 기본요금(전기)×사용일수/30] +전기사용료	
냉 · 난방료		기본료(40,000원)+실제 사용한 가스가격	
음향 설비		기본료(50,000원/마이크 3개 기준) * 1개 추가 시 5,000원	1일기준
빔 프로젝터		10,000원(1시간당)	
기타 집기		탁 자 : 1,000원(1개당) 연설패 : 5,000원 사회대 : 5,000원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증				
허가번호				
신청인 (사용자)	성 명 (대표자)	단체 · 클럽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사용시설				
사용기간	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사용목적 (행사명)			참여 인원	
부속시설 허가내용	음설비	조명 시설		
	전시실	냉 · 난방		
	빔프로젝터	기타		
사용료 납부사항				
허가 조건	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			
<p>「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인)</p>				

(뒷면)

(생 략)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증				
허가번호				
신청인 (사용자)	성 명 (대표자)	단체 · 클럽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사용시설				
사용기간	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사용목적 (행사명)			참여 인원	
부속시설 허가내용	음설비	조명 시설		
	전시실	냉 · 난방		
	빔프로젝터	기타		
허가 조건	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			
<p>「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인)</p>				

(뒷면)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		허가일자	시설명	목적	참여인원	부속시설 및 장비사용					사용료			결재					
		성명(대표자)	주소					음향	조명	전기	냉방	비프로젝터	기타	주무관	팀장	과장					

[별지 제5호서식]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		허가일자	시설명	목적	참여인원	부속시설 및 장비사용					사용료			결재						
		성명(대표자)	주소					음향	조명	전기	냉방	비프로젝터	기타	주무관	팀장	과장						

# 공 고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사유

-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센터 설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
-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 이용자의 심신 기능회복, 건강유지, 여가선용,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사항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사업

○ 이용대상 및 이용비용(안 제4조 및 제5조)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주야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함
-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용자가 부담함

○ 보호기간(안 제6조)

-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자와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함
  - ▶ 주중 : 08:00~22:00
  - ▶ 주말 : 09:00~18:00

○ 운영 · 위탁 관리(안 제7조)

- 센터의 관리 · 운영의 위탁운영과 기간을 명시함
-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운영규정(안 제8조)

-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20. 10. 30. ~ '20. 11. 19.(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노인장애인과장)

나) 전 화 : 061)659-3719, 팩스 : 061)659-5821

다) 이메일(E-Mail) : mind0326@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390-1”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인지·신체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제5조(이용비용)** 센터의 이용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 08:00~22:00
2. 주말 :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령여부 확인이 안됨
4. 처분대상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층수	동수	주용도
2018-허가민원과-신축허가-302	오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4-13	386.19	4	1	다가구주택, 사무소
2018-허가민원과-신축허가-292	임현*	여수시 신기동 44-11	436.38	3	1	다가구주택, 소매점, 일반음식점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30.

여 수 시 장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b>건축허가 취소(건축법 제11조 제7항)</b>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오환



여수시 조례 제1548호

붙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 회계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직전 3년간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
4. 대규모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통합기금을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개별 기금의 조례로 지정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통합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30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49호

붙임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인플루엔자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이 제3조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2.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접종 권장 대상 이외의 시민과 19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④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여수시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0년도의 해당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그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제10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30 일

여 수 시 장 권 2봉



여수시 규칙 제750호

붙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부.

##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여수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상환) 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용자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 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용자”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용자기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용자 하는 경우의 용자기간은 용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용자받은 부서(「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 산하의 과, 사업소 산하의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금 사정상 용자기간 만료일까지 용자금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용자금의 이자) ① 용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용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용자약정 등) ① 용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용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용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용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용자금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용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용자약정에 따른다.

② 용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여수시 금고 연체 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용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총당한다.

④ 용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탁증서

금 액 : 금 \_\_\_\_\_ 원 (₩ \_\_\_\_\_ )

- 예탁기간 : \_\_\_\_\_ ~ \_\_\_\_\_ ( )

- 이 율 : \_\_\_\_\_ %

- 상환조건 :

상기 금액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탁자 : \_\_\_\_\_ 기금운용관 (인)

수탁자 :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여수시장 (인)



##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 약정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자신청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용자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용자조건)** “을”이 인수할 용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용자번호 : \_\_\_\_\_
- 2. 인수연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3. 용자목적 : \_\_\_\_\_ (사업)자금조달
- 4. 용자액 : 금 \_\_\_\_\_ 원 (₩ \_\_\_\_\_ )
- 5. 이자율 : 연 \_\_\_\_\_ %
- 6. 상환기간 : \_\_\_\_\_

**제2조(상환방법)** ① 용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에 상환한다. 다만, 용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균등분할 상환 등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용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용자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용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용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해야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 7월 15일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을”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만료일부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⑥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해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용자금을 용자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용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계획 진행상황
- 2. 용자금 운용상황
-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용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갑 :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을 : \_\_\_\_\_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금 영수증

---

금 \_\_\_\_\_ 원 (₩ \_\_\_\_\_ )

상기 금액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자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약정에 따른 여수  
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인수자 : 여수시수입금출납원 (인)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융자번호 :

융자부서 :

융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용 자 일	용 자 액			용 자 조 건		비고
		계	원 금	이 자	이율(%)	상 환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회 수 계 획				회 수 실 적				회 수 잔 액			작성자 <small>(서명 또는 인)</small>	확인자 <small>(서명 또는 인)</small>
연월일	계	원금	이자	연월일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